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아동가족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아동가족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감면대상 범위를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시설회원의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가입대상 규정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 을 “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” 로 변경하고,
-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회비의 감면 규정 조례안 제8조제3항제9호 중 “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 을 “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 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3. 4일부터 3.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. 4. 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050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4. 5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
(아동가족과장)

1. 제안이유

-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감면대상 범위를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문 개정

2. 주요내용

- 장난감도서관 시설회원 가입대상의 변경(안 제5조제2항)
-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의 감면대상 확대(안 제8조제3항제9호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3. 4.~3. 25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9호 중 “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을 “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□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